

취업규정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삭제한다.

제2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당사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정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제2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연차휴가) ① 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p> <p>② <u>계속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u></p> <p>③ <u>직원이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u></p> <p>④ (생략)</p>	<p>제28조(연차휴가) ① 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p> <p><u><삭 제></u></p> <p><u><삭 제></u></p> <p>④ (현행과 같음)</p>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당사자가 청구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해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적용함에 있어서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당사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정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⑨ (생략)

⑦~⑨ (현행과 같음)